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75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안철수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4.
3. 회부연월일 : 2025. 12.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법정 기한을 초과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학 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제60조, 제65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하고, ②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 시 학교장 등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불이행 시 재정지원 배제 등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③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변경된 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6항,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5조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⑥ ----- ----- ----- ----- ----- ----- -----

현행	개정안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u>학사(學事)</u>,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u>모집정지</u>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략) <u><신설></u>	----- -----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 ----- -----<u>학사(學事)</u>,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 ----- ----- -----. ② ----- ----- ----- ----- ----- ----- ----- ----- ----- ----- -----<u>모집정지나 해당 학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u>-----.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과태료) ① 제34조의5제4항, 제5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 의견

- 현행 법령에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사전에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5¹⁾에서 교육부장관은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까지 ‘대입정책’을 공표하고, 한국대학대학교육협의회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키며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 ‘대교협’)는 매 입학연도의 2년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지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며,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음.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체계]

구분	대입정책 (교육부)	대입전형기본사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시행계획 (대 학)	모집요강 (대 학)
발표 시기	4년 전 (중 2, 2월말까지)	2년 6개월 전 (고 1, 8월말까지)	1년 10개월 전 (고 2, 4월말까지)	수시모집 전년도 5월말, 정시모집 전년도 9월말
주요 내용	‘대입전형 단순화’ 등 정부 정책 발표	△ 공통 전형원칙 △ 전형일정 등	△ 전형별 선발인원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세부일정 △제출서류 △전형내용 △평가기준
관련 법령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①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③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④	대입전형기본사항

(자료 : 교육부)

□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법정 기한을 초과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사례가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학 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 시 학교장 등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면서 불이행 시 재정지원 배제 등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및 변경 공표의 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우선, 개정안(안 제34조의5제6항)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사항의 공표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에서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고 그 변경의 절차 및 변경사항의 공표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음²⁾.

이에 따르면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회원대학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할 때에는 이를 대교협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 대학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대교협의 승인을 받고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음³⁾.

2)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 협의체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에 대한 공표는 현행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바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개정안을 반영하는 경우 개정안의 ‘변경된 계획’이 의미하는 바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므로 법률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안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은 시정이나 변경 명령 사항에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의 법령 등의 위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수단으로 재정지원 배제 등 제재 조치를 추가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명령·학칙을 위반하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1. 원격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이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 및 그 입학연도의 다음 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이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 미준수의 경우에도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등 위반 시 행정처분 세부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경우 (시행계획 공표시기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자료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4)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따라서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의 법령 등의 위반사항은 현행제도로 이미 시정이나 변경 명령 사항이므로 개정 실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고,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불이행시 재정지원 배제 등 재재 조치는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의 균형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다음으로, 개정안(안 제65조)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및 변경 공표의 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현행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 외에 과태료를 별도로 신설하려는 것인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의 미준수가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중복으로 부과 필요성이 있는지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의 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4월말 까지)을 7일 이상 초과한 대학은 8개교이고, 공표기한 미준수에 따른 행정 처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기한 7일 이상 초과 대학]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위반대학	6개	0개	0개	0개	0개	2개

※2020년: 경남과기대학교(5.8.), 대신대학교(5.8.), 대전가톨릭대학교(5.8.), 영남신학대학교(5.8.), 침례신학대학교(5.8.), 한세대학교(5.8.), 2025년: 대전신학대학교(5.9.), 초당대학교(5.8.)
(자료 : 교육부)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대입전형계획 공표시기 미준수 시 모집
정지 처분 등 실효적인 제재규정이 존재하며, 법률이 규정하는 시점
(1년 10개월 전)이 학생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기한이 아닌바, 과태료로 엄격히 제한할 실익이 낮다는 의견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현행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공표시기 미준수에 대한 모집정지 행정처분의 효과를 고려
할 때, 도입의 실효가 적고 오히려 대학에 이중적인 행·재정 부담
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5